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72호 2024. 1. 25.(목)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835호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사천시 규칙 제836호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6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14호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9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10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10
- 사천시 공고 제2024-116호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1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사천시 규칙 제83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5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공무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읍·면·동”을 “읍·면·동, 출장소(이하 “소속기관” 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제1항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를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하고,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5일”을 각각 “10일”로 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택당직을 실시함에 있어”를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도 불구하고”로,
“발생할 경우 또는”을 “발생하거나”로, “경우 재택당직에서”를 “경우”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택당직근무)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치 설치
2. 착신통화 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 등 통신 연락체계 강구
3. 재택당직근무 중 발생하는 각종 긴급사태 조치 계획

제6조의3(당직근무의 미실시)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 대상 인원 1명이 2주마다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
 - 나. 제6조의2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소속기관에서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제7조제1항 중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 사업소는 소장,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각각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을 각각 “소속기관”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제23조제1항 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장”을 “소속기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위하여 직속기관장 및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을 “위하여 비상소집업무담당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반”을 “행정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9조제5호사목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을 “문서연락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및”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25.>

당직근무자 편성기준 (제6조 관련)

구분	일·숙직
본청	- 사령(5급): 1명 - 반장(6급 팀장): 1명 - 반원(6급 이하 직원): 2~3명
직속기관	- 1명 이상
사업소	
읍·면·동	
출장소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24. 1. 25.>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사천시 규칙 제83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월 25일

사 천 시 장 박 동 식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25.>

수혜 대상자의 선발기준(제4조제2항 관련)

구분	지급 기준	비고																		
관내 고교 입학생	<p>■ 일반고등학교에 입학 시 내신 석차 10%까지 장학금 지급. 단, 서부 3개면 소재 중학교는 3학년이 20명 미만인 경우 교내 석차 1위이고 성적 100점기준 환산시 90점 이상인 학생 1명을 5% 이내로 간주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r> <td style="text-align: center;">5% 이내</td> <td style="text-align: center;">5% 초과 ~ 10% 이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able> <p>■ 전문계 고교 입학생은 내신 석차에 관계없이 입학성적 1등은 15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은 70만원, 4등은 50만원, 5등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함 ※ 단, 2개학과 이상 모집하는 학교에서는 각 학과별 1등 중에서 입학성적 순위에 의하여 우선 등위를 결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인원은 학과 구분없이 전체 석차 등위에 따라 지급</p> <p>■ 내신석차 기준 장학금과 전문계 고교 입학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금액이 많은 것을 지급</p> <p>■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타지역 학교로 전학하거나 퇴학, 자퇴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지함(단, 관내 고등학교로 재입학하여 재선정될 경우 기존 장학금 범위에서 지급)</p>	5% 이내	5% 초과 ~ 10% 이내	300만원	200만원															
5% 이내	5% 초과 ~ 10% 이내																			
300만원	200만원																			
한국폴리텍대 항공캠퍼스장학생	<p>■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생은 고교 내신등급 평균 5등급 이내인 사람으로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 재학생은 직전 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사람 중 학장이 추천하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 																			
관외 대학(교) 입학생	<p>■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r> <td style="text-align: center;">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외국어 영역은 제외됨. ▶ 탐구영역은 2개 과목 1등급을 받아야 1등급 인정하고, 2개 과목 2등급 이상을 받아야 2등급 인정함. 	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	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	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3개 평가영역 이상이 1등급인 경우	2개 평가영역이 1등급인 경우	1개 평가영역이 1등급이거나 3개 평가영역 이상이 2등급인 경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예술,체육 기타기능이 우수한 학생과 단체	<p>■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전국대회 이상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올린 학생과 단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 10px 0;"> <tr>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개인 종목</th> <th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단체 종목</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3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1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2위</td> <td style="text-align: center;">3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만원</td> </tr> </table> <p>※ 단체가 5명 미만일 경우 개인 종목을 해당 순위 금액 x 인원수로 지급 ※ 전국대회가 장학금 지급대상인지 여부 결정은 대회 규모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함(연 1회에 한하여 지급)</p>	개인 종목			단체 종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50만원	30만원	2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개인 종목			단체 종목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50만원	30만원	2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구분	지 급 기 준	비고				
성적 향상 학생	<p>▣ 해당 연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성적 10% 이상 향상자</p> <table border="1" data-bbox="379 443 1018 537"> <tr> <td data-bbox="379 443 694 488">20%이상</td> <td data-bbox="694 443 1018 488">10%이상~20%미만</td> </tr> <tr> <td data-bbox="379 488 694 537">50만원</td> <td data-bbox="694 488 1018 537">20만원</td> </tr> </table> <p>▶ 전 과목(또는 국·영·수) 평균 또는 석차 비교 ▶ 학년 또는 학기 비교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 제한</p>	20%이상	10%이상~20%미만	50만원	20만원	
20%이상	10%이상~20%미만					
50만원	20만원					
꿈 드림 장 학생	<p>▣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으로서 보호자가 공고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문대 이상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중 법정 저소득층 기준의 자녀 또는 소득인정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이거나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로서</p> <p>▶ 신입생은 수능성적 4등급 이내가 2개 영역 이상인 자 또는 고등학교 내신등급이 평균 5등급 이내인 자</p> <p>▶ 재학생은 직전 2학기 평균 성적 3.0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국내의 학교에 한정함</p> <p>▣ 타 지급 유형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p> <p>▶ 선발인원은 접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복학생 및 동점자 처리 기준은 선발공고 시 별도 명시함</p>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사천시 고시 제2024-14호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1-103호(2021. 4. 29.)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지정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5.

사 천 시 장

1. 해제지역

-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향촌동 1031-5번지 일원
- 면 적: 120,452㎡

2. 해제사유

-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반영

3. 해제일시: 해제 고시일

4. 지형도면 : 게재 생략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천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도시과(☎055-831-31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사천시 공고 제2024-105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 1. 25.

사 천 시 장

- 공 고 명 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 고 기 간 : 2024. 1. 25. ~ 2024. 2. 9.(15일간)
-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26조7366	그랜저 (GRANDEUR)	김*연	2024. 1. 16.	차량 사기로 차량 행방을 알 수 없음을 이유로 소유주가 운행정지 신청함.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사천시 공고 제2024-116호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2015. 9. 3.)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해수욕장 샤워장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사용료 현행화를 통해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협의회 구성 위원 용어 정비(안 제9조)
- 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 현행화(안 별표2)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해양수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해양수산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136,

FAX : 831-6032)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7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통영해양경찰서장, 사천소방서장, 진주기상대장”을 “사천해양경찰서장, 사천소방서장, 창원기상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 시설명란의 샤워장 중 시설사용료 “1,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해수욕장 시설사용료(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시설명</th>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55%;">시설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샤워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5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p>○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 :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소인 :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시설명	구분	기준	시설사용료	샤워장	대인	1회	1,500원	소인	1회	1,000원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해수욕장 시설사용료(제1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15%;">시설명</th>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55%;">시설사용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샤워장</td> <td style="text-align: center;">대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1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00원</td> </tr> </tbody> </table> <p>○ 위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 :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소인 :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시설명	구분	기준	시설사용료	샤워장	대인	1회	2,000원	소인	1회	1,000원
시설명	구분	기준	시설사용료																				
샤워장	대인	1회	1,500원																				
	소인	1회	1,000원																				
시설명	구분	기준	시설사용료																				
샤워장	대인	1회	2,000원																				
	소인	1회	1,000원																				

관 련 법 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 ① 해수욕장은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해양경찰서) ① 해양경찰서에 서장 1명을 둔다.

- ② 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 ③ 서장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지방해양경찰청에 두는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해양경찰서의 하부조직·관할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서의 명칭 및 위치(제30조제4항 관련)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명 칭	위 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택해양경찰서	경기도 평택시
	태안해양경찰서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해양경찰서	충청남도 보령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부안해양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목포해양경찰서	전라남도 목포시
	완도해양경찰서	전라남도 완도군
	여수해양경찰서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사천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해양경찰서	경상남도 통영시
	창원해양경찰서	경상남도 창원시
	부산해양경찰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울산해양경찰서	울산광역시 남구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포항해양경찰서	경상북도 포항시
	울진해양경찰서	경상북도 울진군
	동해해양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속초해양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해양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3(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 ① 지방기상청·기상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②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3. 12. 12.>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의3제2항 관련)

지방기상청	소속기관	
	명칭	위치
수도권기상청	인천기상대	인천광역시
부산지방기상청	울산기상대	울산광역시
	창원기상대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지방기상청	전주기상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목포기상대	전라남도 목포시
강원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홍성기상대	충청남도 홍성군
대구지방기상청	안동기상대	경상북도 안동시